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5월 15일)  
상정 의결

## 2. 제안 경위 및 주요골자

### □ 대안의 제안 경위

-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타 조례와 중복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침과 상충되며, 조와 항 상호간이 다소 불균형을 이루어 통일감이 없음.
- 따라서, 조와 항간의 체계와 전면적인 내용 수정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 대안의 주요골자

- 제명을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센터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본사업 9개와 모델형 센터의 필수사업 및 선택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
-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
- 운영비 지원, 회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미구 보건소 안에 둔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건강전화 운영
5.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관련 상담·교육 등)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9.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보건소, 시·구청, 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대상 정신보건관련 자문)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사업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 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결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이용료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 한도액 고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시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제114호
의결 년월일	2007. 5. 31 (제136회)

제안년월일 : 2007. 5. 15.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 대안의 제안 경위

-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타 조례와 중복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침과 상충되며, 조와 항 상호간이 다소 불균형을 이루어 통일감이 없음.
- 따라서, 조와 항간의 체계와 전면적인 내용 수정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 대안의 주요골자

- 제명을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센터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본사업 9개와 모델형 센터의 필수사업 및 선택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
-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
- 운영비 지원, 회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미구 보건소 안에 둔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건강전화 운영
5.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관련 상담·교육 등)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9.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보건소, 시·구청, 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대상 정신보건관련 자문)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사업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 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결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이용료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 한도액 고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시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